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의의	5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7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2
1. 제명, 목적 등	12
2. 조사의 범위	12
3. 위원회의 설치, 독립성, 업무 등	14
4. 위원회의 구성	16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활동기간 등	20
6. 위원회의 정원	22
7. 공무원 등의 파견	24
8.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25
9.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28
10. 대국민보고	29
11.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30
12. 준용규정	33
13. 형벌 등의 감면	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2.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이어진 일련의 위헌·위법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대한 사태였음.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비로소 복원되고 있으나 내란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내란 수사가 일부 가담자와 군·경 수뇌부에 국한

되어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내란 특검을 통한 수사 범위 확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중심으로 한 형사 절차만으로는 사태의 원인과 전체적 경과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12·3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내란 관련자의 확인 및 징계·처벌 요구,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주의 강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등의 사건과 12·3 내란의 모의,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12·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을 조사 대상의 범위로 함(안 제2조).

다.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징계하며 재발방지

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5조).

아.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자.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29조).

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30조).

카.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36조).

타.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41조).

파.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3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5년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중대한 사건이었음.

이와 같은 상황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경위, 배후, 관련 기관의 개입 여부 등 핵심적인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함.

이에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벌어진 국헌문란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및 후속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헌정질서 회복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사건의 성격상 대통령, 군, 검찰,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이 폭 넓게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기존 수사기관의 조사만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2025년 6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들이 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정안이 제명과 본문에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가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반면, 이것이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¹⁾ 현 시점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법문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²⁾

한편, 제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제정안에 따라 설치될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것인바, 「계엄법」은 국방부 소관인 반면 행정안전부에는 계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안 2건(2209595 민형배의원안, 2210249 윤종오의원안) 및 관련 청원(2200177호)이 이미 국방위원회로 회부되어 전체 회의 상정 및 검토보고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국방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³⁾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국헌문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칙 52개 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1) 2026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이 선고되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임. 연합뉴스, “한덕수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韓·특검 모두 항소(종합)”, 2026.1.26.

2) 이를 “12·3 비상계엄 등 사건”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현재 국방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지정되어 동 제정안이 2025년 12월 12일자로 회부되어 있음.

【제정안의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조	목적	
	제2조	조사의 범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	위원회의 독립성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제7조	위원장의 구성 등	
	제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6조	의사의 공개	
	제17조	위원회의 정원 등	
	제18조	소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사무처의 설치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제21조	직원의 신분보장	
	제2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3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4조	조사의 개시	
	제25조	조사의 방법	
	제26조	동행명령	
	제27조	고발 및 수사요청	
	제28조	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제29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구분	조문 내용		비고
	제30조	청문회의 실시	
	제3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등	
	제32조	증인 등의 출석 의무 등	
	제33조	증인 등의 선서	
	제34조	증인 등의 보호	
	제35조	검증	
	제36조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7조	업무의 위임·위탁	
	제38조	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제39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제40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41조	대국민보고	
	제42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제43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44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제45조	비밀준수 의무	
	제46조	자격사칭 금지	
	제47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제48조	준용규정	
	제4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0조	벌칙	
	제51조	형벌 등의 감면	
	제52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징계하며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둔다.

둘째,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셋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넷째,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함.

다섯째,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요청을 할 수 있고,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일곱째,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이하부터는 조문별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등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2024년 12월 3일 위법·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명 및 목적 규정에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임.

2. 조사의 범위

제2조(조사의 범위) 제4조에 따른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상을 조사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하 “12·3 내란”이라 한다)

2. 12·3 내란의 모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3. 12·3 내란과 관련하여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4. 12·3 내란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행정각부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각각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5. 12·3 내란과 관련하여 북한 등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사항
6. 12·3 내란과 관련하여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전·선동한 행위에 관한 사항
7. 12·3 내란을 은폐하거나 그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에 관한 사항
8. 12·3 내란을 저지한 공적 조사 및 12·3 내란으로 인한 피해 조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을 12·3비상계엄 선포와 그 모의 및 실행, 국회의원의 표결 방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 야기, 사건의 은폐 및 관련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관련 피해 조사 및 회복에 관한 사항들을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군병력 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 등 여러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관련 의혹들이 아직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포괄적으로 규명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위원회의 설치, 독립성, 업무 등

제4조(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록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12·3 내란 가담자 및 관련자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3. 조사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12·3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과 국가기관의 사과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12·3 내란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6. 12·3 내란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정안은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수행 업무, 독립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본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호를 “12·3 비상계엄 등 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록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에 위한 특별법」 및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도 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보임.

《 위원회의 업무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8명(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민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중 2명 이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중 3명 이상,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중 3명 이상, 시민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4명 중 3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명·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정당의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의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를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8명, 시민단체와 학계가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하며, 국회 추천 인원은 교섭단체가 4명,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되, 안 제2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

체나 비교섭단체는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2명, 비교섭단체가 각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 지명 3명과 국회 추천 8명(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4명), 시민사회와 학계 추천 4명 등 총 15명으로 한 것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17명,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9명과 비교할 때 적정한 수로 보이나,⁴⁾

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제50조제5항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을 추천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해양·선박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또는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정신과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선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선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국회추천 위원 8명 중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한 반면 비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도 4명 중 대통령이 추천한 1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과 함께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의 국회추천 위원 10명 중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위원회의 국회추천 위원 9명 중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 후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가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볼 수 있을 것임.

-
3. 10·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위원회의 위원구성 관련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위원구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 - 국회 10명,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유족대표 3명 - 국회추천 10명은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5명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전원 국회에서 추천 - 국회의장(각 교섭단체와 협의 후 추천)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명, 그 외 교섭단체 4명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 대통령 3명, 국회 8명, 시민사회 및 학계 4명 - 국회추천 8명은 교섭단체 4명, 비교섭단체 4명
	상임위원 5명 - 국회 2명(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1명), 대법원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유족대표 1명	상임위원 3명 - 국회의장 1명,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1명, 그 외 교섭단체 1명	상임위원 4명 - 대통령 1명, 국회의장(정당의 교섭단체외 협의 후 추천) 2명, 비교섭단체 1명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안 제2조 각 호의 행위와 관련된 사유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등은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해당 정당이 12·3 비상계엄 등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들의 위원 추천권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규정이 제정안의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해당 정당의 정치적 권리 및 조사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위원 추천 몫은 인정하되 위원 결격사유를 강화하거나, 추천 위원에 대한 거부권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임.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를 종료하는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③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의 추천·지명권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추천 또는 지명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4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완료 후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정안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고(안 제8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 1년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 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대상의 광범위함과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기간 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유사 위원회의 활동기간 입법례 비교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 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위원회 활동기간	- 최초 1년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최초 1년 -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최초 1년 6개월 -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활동기간 연장 시 “대통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 제정안의 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보고 대상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등의 표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유사 위원회의 기간연장 보고 관련 입법례 비교 》

구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활동기간 연장 보고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u>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u>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을 말한 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u>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u>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u>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u>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6. 위원회의 정원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6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가 위원회 직원의 정원을 120명 이내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7조가 조사위원회의 정원을 6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⁵⁾

제정안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발생한 사건들의 광범위성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본 위원회의 정원을 이태원참사조사위원회와 동일하게 60명 이내로 하려는 것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유사 위원회 직원의 정원 수 비교 》

구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직원의 정원 수	120명 이내	60명 이내	60명 이내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5)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조사위원회의 정원 등) ①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7. 공무원 등의 파견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면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가기관등이 파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요청 및 파견 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24조제4항에서 파견 공무원의 정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려는데, 일반행정·예산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청·검찰청·국방부·국정원 등 조사 및 수사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활동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공무원의 수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제5항이 파견 공무원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⁶⁾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는 이와 같은 파견 공무원 수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제27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발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⑤ 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요청(안 제27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제29조)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8조).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규정의 경우 사건 관련자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처벌·징계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⁷⁾

7)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0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다만, 안 제28조에서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에 법적 판결을 내리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유사 입법례⁸⁾를 참고하여 수사 종결 기간 및 판결 선고 기간을 추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조사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사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피고발인이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받은 사건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의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

- 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1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수사 및 재판 기간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9.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제36조(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의 경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반면,⁹⁾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정안에 따라 구성될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및 북한과의 무력충돌 유도·야기 의혹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9)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2(압수·수색 영장 청구의뢰) ①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의 면담조서, 조사보고서 등 해당 의뢰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국민보고

제41조(대국민보고)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조사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검사의 수사와 위원회의 조사의 유사성, 대국민보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대국민보고 관련 유사 입법례 》

구 분	내 용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11.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

제43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 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제정안은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3조), 위원회와 특별검사 간 업무협조 의무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는 이른바 ‘상설특검’으로, 국회에서 개별 법률로서 제정되어야 하는 ‘일반특검’과 구분됨.

《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의 비교 》

구분	상설 특검	일반 특검
법적근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	개별 특검법
도입절차	국회에서 수사 요구안 통과 시 자동 가동	국회에서 개별 특검법 제정
임명방식	특검추천위 후보 추천, 대통령 임명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절차
대표사례	세월호 참사 특검(2021)	국정농단 특검(2016), 드루킹 특검(2018) 등

※ 국방위원회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9595호) 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

안 제43조는 위원회가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설특검을 구성하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사권한이 없는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¹⁰⁾

2025년 6월 공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¹¹⁾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미 진행된바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임.

10)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청을 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를 요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후 처음으로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39조(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11) 2025.6.5. 국회의결, 2025.6.10. 공포

12. 준용규정

제48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는 공익신고자 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¹²⁾ 제정안은 이를 이 법에 준용하여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법제원칙 상 준용범위는 명확하게 특정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는바, 안 제48조처럼 이 법 전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가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분 노출 방지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등과 같이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3. 형벌 등의 감면

제51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한 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때
3.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한 경우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된 공익신고, 국민권익위 신고 또는 조사활동에 협조한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비상계엄 선포 등의 사건들에 다수의 사람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관련 내부자의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자진신고 및 내부증언으로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조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인정됨.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검사 임명 관련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유사 입법례가 있어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다만, 법 문언이 형벌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제원칙 상 타당하다고 보
이므로, 유사 입법례 등의 표현을 참고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형벌의 감경 또는 면제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형벌 등의 감면)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문 의 처
02)6788-5343